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캐피탈㈜

2. 조치일 : 2021. 8. 20.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 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내규「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및「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등에 따라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등을 식별·평가하기 위하여 고객의 국적, 거래방식, 의심거래 빈도 등을 반영한 고객평가모형을 운용하고 있으나

최초 고객확인 이후에 발생한 고객의 거래방식 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의 변동내용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최초 고객확인 이후 변경되는 위험평가 요인들을 반영토록 고객평가모형을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고객 위험평가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람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고객의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식별·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업무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의심거래보고 업무 체계 및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의심거래 추출기준 운영 및 관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람

① 업무 담당부서가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건들에 대하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자금세탁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제외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보고 제외사유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도 수립되어 있지 않음

② 2019.◇.◇.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개의 STR추출룰을 운용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 구축 이후 의심거래로 한건도 추출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미흡한 STR추출룰이 다수 있고, 2020.◇.◇. 사업영역 조정으로 인하여 사업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STR추출룰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않는 등 STR추출룰 운영 및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함

(3)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관리 미흡

내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 「자금세탁방지업무매뉴얼」 및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기준」을 마련·운영 중이나,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및 실제 업무절차 등에 부합되도록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

①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 규정」이 아닌 대표이사 전결로 운영되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에 반영되어 있음

② 「자금세탁방지업무매뉴얼」(2019.◇.◇. 제정) 및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기준」(2018.◇.◇. 제정)은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법규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회사의 실제 업무절차와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음